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891호
2024년 4월 3일
수요일

선 람	기관장

고

○ 공 고 제 6 4 9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362호선, 소로2-2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공고·열람	도 시 재 생 과	2
○ 공 고 제 6 7 2 호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단속 개시에 따른 행정예고	교 통 행 정 과	10
○ 공 고 제 6 7 5 호	취득세 4월 공시송달	세 무 1 과	14
○ 공 고 제 6 8 5 호	「남동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토 지 정 보 과	18

고 시

○ 고 시 제 4 2 호 간석초교주변 다복미우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도 시 재 생 과 28
(경미한 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홍보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4-64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362호선, 소로2-2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공고·열람

남동구 고시 제2024-11(2024. 2. 5.)호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362호선, 소로2-2호선)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변경)를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3.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50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 능골로 소로2-362호선 도로개설공사
- 남발촌 소로2-2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변경)

- 소로2-362호선: L=258m, B=8m, A=3,182㎡
- 당초: 소로2-2호선: L=55m, B=8m, A=704㎡
- 변경: 소로2-2호선: L=55m, B=8m, A=696㎡
- ※ 소로2-2호선 토지분할에 따른 면적 감소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수산동 소로2-362호선
 - 성명: 남동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 수산동 소로2-2호선
 - 성명: 남동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없음)

- 실시계획고시일 ~ 202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따로 붙임

7.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4일간
- 의견제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8. 열람 장소

- 남동구청(도시재생과 032-453-2972, 2954, 남동구 소래로 633)

9.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별첨]용지조서: 소로2-362호선(변경 없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수산동	501-3	전	106	106	송*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2	수산동	502-2	전	429	429	천*현	서울 양천구 신정동 ***	
3	수산동	597-114	도로	536	536	국	건설부	
4	수산동	499-5	전	134	134	최*창	서울 강남구 광평로 10길 ***	
5	수산동	506-1	전	240	240	최*식	인천 남구 인하로 430번길 ***	
6	수산동	507-1	전	45	45	신*일	인천 남동구 만수동 ***	
7	수산동	499-4	전	470	470	최*관	인천 남동구 능골로 ***	
8	수산동	498-4	전	78	78	송*훈	인천 남동구 구월로 ***	
9	수산동	354-17	전	31	31	정*량	남구 주안동 ***	
10	수산동	354-16	전	40	40	김*은	인천 남동구 능골로 ***	
11	수산동	600-27	도로	281	281	국	건설부	
12	수산동	598-7	구거	588	588	국	농림축산식품부	
13	수산동	354-19	답	154	154	천*분	서울 동작구 사당로 ***	
14	수산동	492-3	전	48	48	최*미외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	
15	수산동	354-18	잡종지	1	1	이*승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	
16	수산동	597-47	도로	1,830.6	1	국	건설부	
합 계					3,182			

한전주 조서:소로2-362호선(변경 없음)

	소재지	지번	도로	위치 (STA)	방향	번호	비고
1	수산동	502	소로2-362	0+003.85	우	도림지 57,213	한전
2	수산동	501	소로2-362	0+008.21	좌	도림지 57,L13,A1	한전
3	수산동	502	소로2-362	0+035.40	좌	도림지 57,L13,H1	한전
4	수산동	597-110	소로2-362	0+056.74	우	도림지 57,L12	한전
5	수산동	499-3	소로2-362	0+100.00	좌	도림지 57,L11	한전
6	수산동	499-1	소로2-362	0+116.70	우	도림지 57,L10	한전
7	수산동	597-110	소로2-362	0+175.89	우	도림지 57,L9	한전
8	수산동	354-5	소로2-362	0+187.00	좌	도림지 57,L9,A1	한전
9	수산동	354-9	소로2-362	0+222.00	좌	도림지 57,L8	한전
10	수산동	600	소로2-362	0+264.90	좌	도림지 57,L7	한전

지장물 조서:소로2-362호선(변경 없음)

	소재지	지번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산출근거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수산동	499-1	비닐하우스	5.0 x 17.0	1	84m²	최*관	인천 남동구 능골로 *** (수산동)	
2	수산동	499-1	비닐하우스	5.7 x 10.5	1	60m²	최*관	인천 남동구 능골로 *** (수산동)	
3	수산동	499-1	비닐하우스	6.0 x 6.3	1	38m²	최*관	인천 남동구 능골로 *** (수산동)	

통신주 조서:소로2-362호선(변경 없음)

	소재지	지번	도로	위치 (STA)	방향	내용	비고
1	수산동	502	소로2-362	0+003.65	우	-	KT
2	수산동	597-110	소로2-362	0+055.39	우	-	KT
3	수산동	354-9	소로2-362	0+220.80	좌	-	KT

용지조서: 소로2-2호선(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수산동	600	도	1,087	52	국	건설부	
1	수산동	600-29	도	52	52	국	건설부	토지분할에 따른 신규지번 부여
2	수산동	598-6	구	662	32	국	농림축산식품부	
2	수산동	598-12	구	24	24	국	농림축산식품부	토지분할에 따른 신규지번 부여
3	수산동	354-9	답	1,743	169	천*분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	
3	수산동	354-22	답	169	169	천*분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	토지분할에 따른 신규지번 부여
4	수산동	354-7	잡	400	229	이*승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662번길 ***	
4	수산동	354-21	잡	229	229	이*승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662번길 ***	토지분할에 따른 신규지번 부여
5	수산동	354-15	답	73	73	김*창	인천 남구 학익동 ***	
6	수산동	354-10	전	1,248	41	김*창	인천 남구 학익동 ***	
6	수산동	354-23	전	41	41	김*창	인천 남구 학익동 ***	토지분할에 따른 신규지번 부여
7	수산동	356	답	99	5	**종친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7	수산동	356-1	답	5	5	**종친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토지분할에 따른 신규지번 부여
8	수산동	357	답	142	91	**종친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8	수산동	357-2	답	91	91	**종친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토지분할에 따른 신규지번 부여
9	수산동	354-1	대	330	5	김*창외1	인천 남구 학익동 ***	
9	수산동	354-20	대	5	5	김*창외1	인천 남구 학익동 ***	토지분할에 따른 신규지번 부여
10	수산동	345-9	도	2,220	7	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10	수산동	345-17	도	7	7	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분할에 따른 신규지번 부여
합 계			당초	8,004	704			
			변경	696	696			

한전주 조서:소로2-2호선(변경 없음)

	소재지	지번	도로	위치 (STA)	방향	번호	비고
1	수산동	354-7	소로2-2	0+033.00	우	도림지 57,L7,R1	한전

주 민 의 건 서

사 업 명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362호선, 소로2-2호선)사업		
사업장 위치			
의견제출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의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사업인정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자

(서명)

남동구청장 귀하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4-672호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단속 개시」에 따른 행정예고

남동구의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효율적인 불법주정차단속을 위하여 이설 설치한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단속카메라(CCTV) 1개소 단속 개시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2.

남 동 구 청 장

1. 단속목적 : 원활한 교통소통 및 효율적인 불법주정차단속
2. 주요내용 :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단속 개시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4. 촬영범위 : 주정차 금지구역 (최대 200m까지)
5. 단속시행일
 - 가. 시범운영(계도단속) : 2024. 4. 23.(화) ~ 4. 30.(월) [7일간]
 - 나. 정식운영(과태료부과단속) : 2024. 5. 1. ~
6. 단속기준 및 운영시간
 - 가. 단속기준 : 10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나. 운영시간

운영	평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만수동	08:00 ~ 18:30	미운영	미운영

7. 과 태 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의 부과기준에 따름

※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구간은 과태료 최대 13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음

8. 행정예고기간 : 2024. 4. 2. ~ 4. 22. (공고일로부터 20일간)

9. 의견제출방법

가.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남동구청) 교통행정과 주차단속팀

나. 팩스 : 032-453-2899 (발송 후 ☎032-453-2897으로 전화 필수)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문의사항 :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주차단속팀 ☎032-453-2897

11. 단속실시 장소 ※ [붙임1] 불법 주·정차 고정형CCTV 상세위치 참고

구분	연번	행정동	주소	장소
신규 설치	1	만수3동	만수동860-4	만수5동 소방파출소 맞은편(LG U+ 앞)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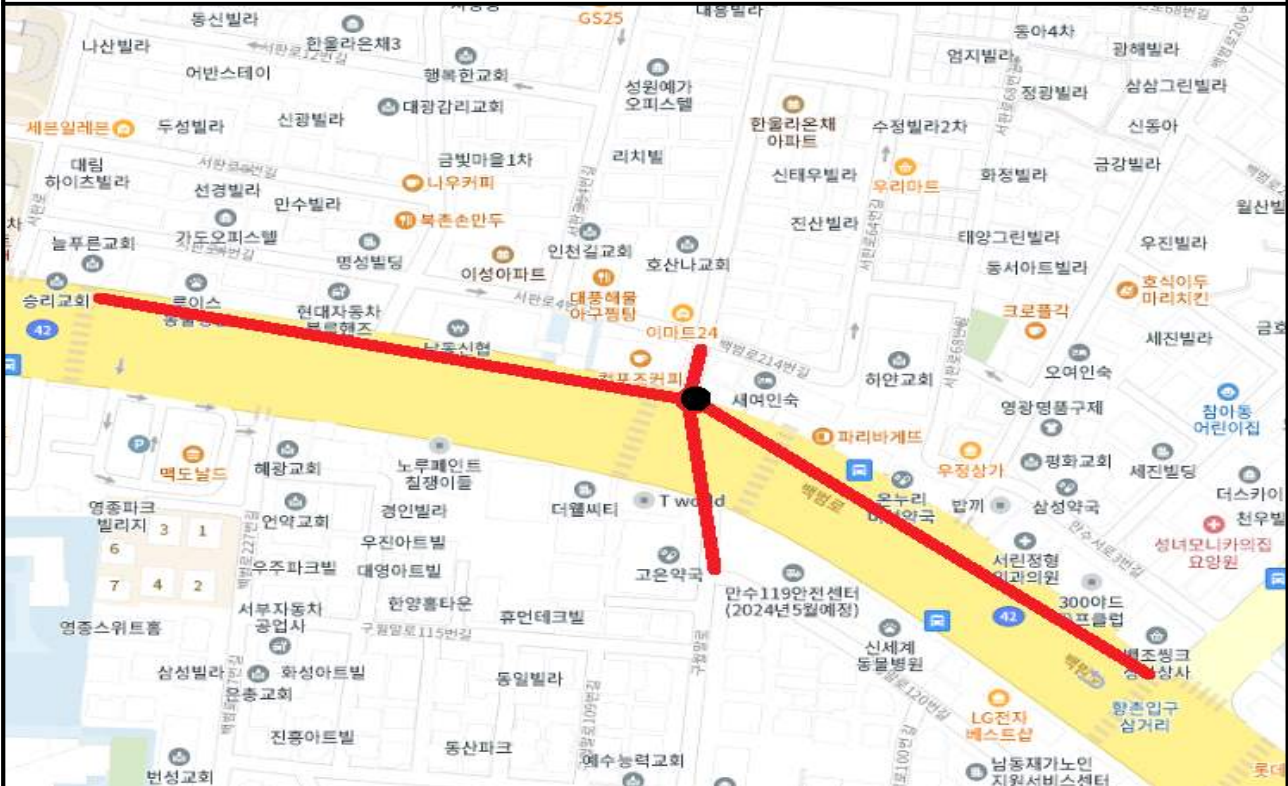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운영

위치도

파리바게뜨 앞(만수동 861-6) → LG유플러스 앞(만수동 860-4) (이설)

■ 단속구역



■ 현장사진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4-675호

취득세 고지서 공시송달

대 상	정**철 외 17인 (중복 제외)
주소 또는 거소	내역별첨
서 류 의 명 칭	취득세 수시분, 독촉분 고지서, 과세예고통지서
서 류 의 내 용	취득세 수시분, 독촉분 고지서, 과세예고통지서

위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령인없음”,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이사”, “반송함장기방치” 및 “폐업” 등으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인 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서류 송달의 효력을 발생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4. 4. 12.

남 동 구 청 장

공시송달 내역(취득세 수시분, 독촉분)

연번	주민인 번호	납세자명	과세(문서)번호	세목	구분	등기 발송일	공고사유	세액합계	등기번호	비고
1	730107-1	정○철	28200-101501-202401-2-550-000005	취득세 (부동산)	독촉장	2024-03-13	수령인없음	8074370	1072895158931	
2	730107-1	정○철	28200-101501-202401-2-550-000006	취득세 (부동산)	독촉장	2024-03-13	수령인없음	7785290	1072895158932	
3	730209-1	김○호	28200-101501-202401-2-550-000009	취득세 (부동산)	독촉장	2024-03-13	수령인없음	2509030	1072895158936	
4	841226-1	김○철	28200-101501-202401-2-550-000029	취득세 (부동산)	독촉장	2024-03-13	수령인없음	1309520	1072895158918	
5	960324-1	이○우	28200-101501-202401-2-551-000001	취득세 (부동산)	독촉장	2024-03-13	수취인,주소,거소, 영업소불명	1071180	1072895158920	
6	870531-1	임○만	28200-101501-202401-2-551-000002	취득세 (부동산)	독촉장	2024-03-13	수령인없음	2754880	1072895158921	
7	890916-1	오○성	28200-101501-202401-2-551-000012	취득세 (부동산)	독촉장	2024-03-13	수령인없음	1802280	1072895158938	
8	890916-1	오○성	28200-101501-202401-2-551-000013	취득세 (부동산)	독촉장	2024-03-13	수령인없음	1803590	1072895158939	
9	850629-1	고○원	28200-101501-202401-2-570-000028	취득세 (부동산)	독촉장	2024-03-13	수령인없음	2733090	1072895158917	
10	730209-1	김○호	28200-101501-202401-2-582-000010	취득세 (부동산)	독촉장	2024-03-13	수령인없음	2783560	1072895158935	
11	470618-1	박○모	28200-101501-202401-2-583-000027	취득세 (부동산)	독촉장	2024-03-13	수령인없음	6523090	1072895158908	
12	110111-2	주식회사 제○스건축	28200-101501-202401-2-700-000011	취득세 (부동산)	독촉장	2024-03-13	수령인없음	4970350	1072895158937	
13	850827-1	송○섭	28200-101501-202401-2-710-000004	취득세 (부동산)	독촉장	2024-03-13	수령인없음	2769820	1072895158922	
14	840824-1	최○욱	28200-101501-202403-2-520-005990	취득세 (부동산)	수시분	2024-03-13	수령인없음	5501940	1072895158925	

연도	주민 번호	납세자명	과세(문서)번호	세목	구분	등기 발송일	공고사유	세액합계	등기번호	비고
15	930514-2	이O혜	28200-101501-202403-2-530-005991	취득세 (부동산)	수시분	2024-03-13	수령인없음	2745210	1072895158904	
16	700418-1	김O철	28200-101501-202403-2-580-005993	취득세 (부동산)	수시분	2024-03-13	수령인없음	18521600	1072895158905	
17	600907-1	권O덕	28200-101501-202403-2-582-005992	취득세 (부동산)	수시분	2024-03-13	수령인없음	20088140	1072895158906	
18	110111-5	인O논O역개 발 주식회사	28200-101501-202403-2-690-005989	취득세 (부동산)	수시분	2024-03-13	수령인없음	12120255 50	1072895158926	

공시송달 내역(과세예고 통지)

연번	주민법인번호	납세자명	송달내용	등기번호	공고사유	비고
1	620726-*****	김**숙	상속취득세 과세예고	1072895151593	폐문부재	
2	420221-*****	이**덕	상속취득세 과세예고	1072895151581	보관기간경과	
3	650913-*****	김**호	상속취득세 과세예고	1072895151591	보관기간 경과 반송-특수실 등록	
4	640201-*****	노**희	상속취득세 과세예고	1072895151582	보관기간경과	
5	710201-*****	이**원	상속취득세 과세예고	1072895151578	폐문부재	
6	350910-*****	지**숙	상속취득세 과세예고	1072895151588	보관기간경과	
7	491105-*****	김**자	상속취득세 과세예고	1072895151579	보관기간경과	
8	440813-*****	김**관	상속취득세 과세예고	1072895151587	수취거절	
9	550226-*****	원**애	상속취득세 과세예고	1072895151586	수취거절	
10	890613-*****	김**서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생애최초)	1072895151521	보관일경과반송	
11	781108-*****	N*E*H*M*L*V*A*K*O*N*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다주택중과)	1072895151519	수취인불명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4-685호

「남동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3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주소정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명주소법」 등 현행 법령에 맞게 상위법령 근거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근거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
(안 제2조제1항, 제3조, 제9조제1항 제8호에서 제10호)
- 위탁 가능한 업무 추가(안 제9조제1항제7호)
- 불필요한 조항 삭제(제10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토지정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471, FAX 453-247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22조
- 「도로명주소법」 제25조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0조, 제43조, 제52조, 제53조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

남동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주소정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명주소법」 등 현행 법령에 맞게 상위법령 근거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 근거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
(안 제2조제1항, 제3조, 제9조제1항 제8호에서 제10호)
- 위탁 가능한 업무 추가(안 제9조제1항제7호)
- 불필요한 조항 삭제(제10조)

☐ 본 문: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22조
- 「도로명주소법」 제25조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0조, 제43조, 제52조, 제53조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제5항과 제54조제6항”을 “제43조제5항과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으로, “홈페이지”를 “인터넷 누리집”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6조제5항에 따른 비용”을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른 광고비용”으로 한다.

제4조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중전의 제7호) 중 “영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을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중전의 제8호) 중 “영 제59조”를 “영 제53조”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영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를 “영 제52조에 따른”으로 한다.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표기 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6조제5항과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및 그 기준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남동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2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 ----- ----- 제43조제5항과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 ----- -- 인터넷 누리집----- -.
제3조(광고의 비용)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영 제56조제5항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제3조(광고의 비용) ----- ----- -- 경우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른 광고비용-----. 1. · 2. (현행과 같음)
제4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지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 5. (생략)	제4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 ----- 법 제27조----- ----- -----. 1. ~ 5. (현행과 같음)
제9조(위탁) ① 구청장은 주소정	제9조(위탁) ① -----

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법 제 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설>

7. 영 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8. 영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영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 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②·③ (생략)

제10조(토지 등의 출입증)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 지점번호 표기 시설물 및 국가 지점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
--

10. 영 제53조-----
--

9. 영 제52조에 따른 -----

②·③ (현행과 같음)

<삭제>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도로명주소법

제25조(주소정보기본도 등의 작성 및 활용 등)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광고의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광고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0조(국가지점번호판의 철거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지점번호 표기 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관리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등 긴급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다.

제43조(사물주소판의 설치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 받은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주소판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사물주소판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유형, 지역의 여건 및 설치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물주소판의 설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설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는 경우 지면으로부터 1.6미터 이상의 높이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을 안내하는 표지판 등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높이·크기 등을 고려해 설치하는 높이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사물주소판을 관리해야 하며, 사물주소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시장등에게 사물주소판을 재교부받아 부착·설치하거나 직접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또는 재교부에 필요한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2조(주소정보 산업의 진흥)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분야(이하 “주소정보 산업”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소정보산업의 육성시책 마련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국내외 주소정보산업에 관한 현황 및 기술 동향 등의 조사 및 공개
 - 나. 주소정보산업과 관련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 다. 주소정보의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 라. 주소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 마련 및 산업표준의 제정·개정
2.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 유형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드론,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용 등
 - 나. 실내 위치의 안내
 - 다. 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의 활용
 -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주소정보산업에서 활용하는 주소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주소정보의 편집·가공 및 유통
 - 나. 산업 분야에서 사용·관리하는 주소정보의 품질인증
 - 다. 민간부문에서 사용하는 주소정보의 보안성 검토
4.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5. 주소정보시설의 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지원
 - 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6. 주소정보와 관련된 사업·연구 등을 위한 협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제53조(주소정보관리시스템) ① 주소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는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시·도에는 시·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시·군·구에는 시·군·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둔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의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작성·관리하는 주소정보가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⑥ 시장등이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4-42호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384호(2009.12.14.)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15-378호(2015.12.31.),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272호(2016.11.14.),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9-73호(2019.6.14.),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23-130호(2023.10.24.),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23-148호(2023.11.23.)로 변경 고시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0-33번지 일원의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 재개발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경미한 변경) 고시합니다.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정비과(☎032-440-3472) 및 남동구 도시재생과(☎032-453-839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2일

남 동 구 청 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없음)

○ 정비구역 결정조서

지정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재개발 정비사업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55,771.3	-	55,771.3	

3. 정비계획

가.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5,771.3	-	55,771.3	100.0	

2) 용도지구

○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없음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변경)

1) 교통시설(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	소로	1	13	6~10 (주요폭원: 10m)	국지도로	373	소1-10	중3-6	일반 도로		인고2009-384(2009.12.14.)	
-	중로	3	7	12	국지도로	200	소3-192	중2-721	일반 도로		인고2009-384(2009.12.14.)	
-	중로	2	721	15	국지도로	50	중2-24	중3-7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10	10~12	국지도로	118	중3-7	소1-13	일반 도로		인고2009-384(2009.12.14.)	
변경	소로	1	10	10~13	국지도로	118	중3-7	소1-13	일반 도로			폭원 확장
-	소로	2	103	8	국지도로	38	중2-773	중2-24	일반 도로			

- ※ ()는 구역내 도로연장임
- ※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 ※ 금회 도로결정 조서는 다복마을구역에 한하여 제작성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 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 1-10	소로 1-10	• 폭원 확장 10~12m → 10~13m	• 지중화공사를 위한 소로1-10호선 일부 구간 폭원 확장

2) 교통시설(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주차장	남동구 구월동 70-75번지 일원	551.0	감) 78.3	472.7	인고 2009-384 (2009.12.14)	부지만 무상귀속, 조성비용 납부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변경)사유
①	주차장	• 면적 변경 551.0㎡ → 472.7㎡ (감 78.3㎡)	• 지중화공사를 위한 소로1-10호선 일부 구간 폭원 확장

※ 사업시행자가 대지만 관리청에 무상귀속하고, 조성 공사비는 관리청에 납부함

3) 공간시설(공원)

○ 공원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원	소공원	남동구 간석동 142-11번지 일원	6,042.4	-	6,042.4	인고2009-384(2009.12.14.)	조성 후 무상귀속

4) 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공 청사	-	남동구 간석동 70-8번지 일원	1,034.4	-	1,034.4	인고2009-384 (2009.12.14.)	부지만 무상귀속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라.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역명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합 계	존 치	개 수	철거	
다복마을 구역	기정	다복마을 재개발 정비구역	55,771.3㎡	남동구 구월동 70-16번지 일원	176	1	-	175	종교시설 존치

마.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구역명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	칭 면 적(㎡)	명	칭 면 적(㎡)					
다복 마을 구역	변경	다복마을 재개발 정비구역	55,771.3	획지1-1 (공동주택)	42,823.6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0% 이하	236.78% 이하	100m 이하	
				획지1-3 (종교시설)	612.3	종교집회장	60% 이하	250% 이하	30m 이하	
				획지1-4 (주차장)	472.7	노외주차장	60% 이하	250% 이하	20m 이하	
				획지2-1 (공공청사)	1,034.4	공공청사	60% 이하	250% 이하	20m 이하	
				획지2-2 (종교시설/근린생활시설)	798.0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60% 이하	250% 이하	20m 이하	
	구 분				내 용					
	건축물 용도	획지1-1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중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한함)						
		획지1-3 획지2-2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중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한함)						
		획지2-1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청사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중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한함)						
		획지1-4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주차장 ○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불허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 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외의 용도 ○ 허용용도 중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한함)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비율 -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의 건설비율: 총건설 세대수의 80%이상				
						40㎡이하	60㎡이하		85㎡이하	
	5.73%					51.84%		42.44%		
	임대					분양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0조의3 주택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60㎡ 이하) 건설 등 규정을 준수하여 공급 ○ 법정상한용적률 : 249.83%이하 -(법정상한용적률- 정비계획 용적률) x 50% = (249.83-236.81)x 50% = 6.5%이상 (73세대) ※ 사업시행인가시 소형주택면적 확정으로 건설면적 변경될 수 있음.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전체건립세대수의 5% 이하 ○ 전용면적 40㎡이하의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5%이상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비 고
					건축 한계선	1-1	도로경계선	6m 이격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공동 주택 용지
							인접대지 경계선	3m 이격		
완화기준 적용				○ 용적률 : 완화(인센티브) -용적률 완화 : 공공시설부지제공(16.78%)+지하주차장(10%)						

※ 획지1-2의 공원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바.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사.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아.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1-1	1	50,029.3	1	남동구 구월동 69-66번지 일원	42,823.6	공동주택
1-2			2	남동구 간석동 141-2번지 일원	6,042.4	소공원
1-3			3	남동구 구월동 70-32번지	612.3	종교집회장
1-4			4	남동구 구월동 70-75번지 일원	472.7	주차장
2-1	2	1,832.4	1	남동구 구월동 70-8번지 일원	1,034.4	공공청사
2-2			2	남동구 구월동 70-67번지 일원	798.0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 도로는 별도로 가구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자. 정비사업의 시행계획(변경 없음)

1)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구역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2)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법」 제74조에 따라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차.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변경 없음)

카.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 없음)

타.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1) 기본 방향

- 정비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청소년 탈선 등 범죄장소로 사용되거나 재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 단지설계 시 건축물 배치, 출입구 위치 등 물리적 환경 요소를 통해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우발적 범죄 등 최소화

2) 사업단계별 범죄예방대책

구 분	계 획 내 용
이주철거 이전	○ 정비구역 내 폐쇄회로, 가로등, 보안등 및 방범초소 설치 ○ 관련기관 비상연락망 및 자율방범대 협조체계 구축
이주철거 이후	○ 구역 내 주요 지점에 경비인력이 상주할 수 있는 순찰 초소를 설치하여 범죄발생 예방 ○ 현장에 상주하며, 순찰활동을 통해 범죄발생 여건 차단 ○ 이주 철거계획 수립 시 블록 단위의 이주계획을 수립하여 이주 즉시 철거가 이루어져 공사기간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 공사 내 물건폐기를 통해 거주권이 없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도록 함
공사착공 이후	○ 공사현장에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나 위임자가 상주해 현장을 수시 점검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공사장의 안전 및 범죄 예방

파.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하.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해당 없음

거.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계 획 목 표	비 고
건축 한계선	Ⅰ-1	• 도로경계선	• 6m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건축한계선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공동주택용
		• 인접대지경계선	• 3m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너.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남동구 도시재생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